중앙대학교 인문대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021. 04. 02 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제3장 선거 유관기관
제4장 선거
제5장 이의제기
제6장 징계
제7장 투표
제8장 개표
제9장 당선
제10장 선거 정리 사업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본 세칙은 중앙대학교 인문대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이하 '인문대학생회 선거'라 한다)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적용범위)
가. 본 세칙은 중앙대학교 인문대학생회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학과 학생회장 선거는 해당 학과 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에 준하여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 시행 세칙이 없을 시 본 시행 세칙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의 의결로 시행한다.

3조. (원칙)
가. 인문대학생회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진행되어야 한다.
나. 인문대학생회 선거는 이전 인문대학생회의 사업과 활동을 발전적으로 평가, 지향하여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워내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 인문대학생회 선거는 회원들이 인문대학생회의 의의와 기능, 목표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확립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라. 인문대학생회 선거는 인문대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종이 투표와 전자 투표 중 선택하여 실시된다.

마. 본 회의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의 선거는 해당기구의 자치규정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의 선거 관련 자치규정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세칙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4조. (구성원의 책임)
가. 본 회의 회원은 인문대학생회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

5조. (위상) 인문대학생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 조정하며, 인문대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거에 있어서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6조. (목적) 인문대학생회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조. (업무 및 권한) 인문대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독점적으로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가. 인문대학생회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 및 활동을 기획, 집행한다.
나. 인문대학생회 선거를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다. 각 선거 운동 본부의 선전물, 징계내용 및 합동 공청회 결과 등을 건물, 학생회 게시판, SNS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다.
라. 선관위가 각 선거운동 본부와 합의한 방식과 세칙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시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등을 포함한 가중 제제 조치를 각 선본에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 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마. 인문대선관위는 선거 후 제10장의 업무를 끝내고 해체한다.

8조. (구성)
가. 선관위원장은 당해 인문대학생회장으로, 부위원장은 당해 부학생회장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부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나. 비상대책위원회로 이루어졌을 경우 선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비상대책부위원장으로 하며, 의결권은 각각 하나만 가진다.
다. 인문대운영위원회 전원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인문대학생회 집행위원회(국) 2인을 산하에 둘 수 있다. (집행위원회(국)는 임명 시 인문대선관위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결권이 없다.)
라. 인문대운영위원회 내 입후보를 위해 공직 사퇴한 자는 해당 학과 부회장 혹은 과대표 1인을 선관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9조. (소집, 개최 및 의결)
가. 인문대선관위 제반 일상 업무처리와 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시 인문대선관위원장, 인문대선관위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나. 인문대 선관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과반수 출석을 확인한 후 즉시 개회한다.
다. 의결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의결은 인문대 선관위원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무효표 판정의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조. (학과 선거 관리 위원회)
가. 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각 학과 학생회에서 책임진다.
나. 학과선관위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사퇴한 이후에는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선거 유관기관

제1절 학내언론

11조. (범위) 학내언론은 중앙대학교에 등록된 공식 언론기구 -중대신문, UBS, 중앙문화, 녹지-로 범위를 규정한다.

12조. (역할 및 권리)
가. 학내언론은 선거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할 책임을 갖는다.
나. '최소한의 공정성을 상실하는 경우'를 다음의 각 호로 규정한다.
1) 한쪽 선본을 비방하는 기사를 실은 경우
2) 고의적으로 한쪽 선본에 대해서만 호의적이거나 자세한 기사를 실은 경우
다. 학내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선관위 및 각 선본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선관위와 각 선본은 선거와 관련한 취재를 위한 학내언론의 인터뷰요청이나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할 수 있다.
라. 선관위는 학내언론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합동공청회, 공동정책간담회, 후보자토론회에서의 질문 우선권 부여
바. 12조 '나'항에서 언급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선관위는 의결을 거쳐 해당 학내언론기구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예비 선거운동본부

13조. (역할)
가. 예비 선거운동본부(이하 예비 선본)는 예비 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예비

후보의 후보자 등록을 목적으로 선관위의 감독 하여 후보자 추천 활동을 진행하는 조직이다.
나. 예비 선본은 공정하고 원활한 후보자 등록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 (단, 예비 선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은 가능하다.)

14조. (구성)
가. 각 예비 선본은 예비 정후보, 예비 부후보, 예비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예비 선본장), 예비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예비 선본원)으로 구성된다.
나. 예비 정•부후보는 당해 인문대학생회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여야 한다.

15조. (예비 선거운동본부장)
가. 예비 선본장은 선관위에 대하여 예비 선본을 대표함과 동시에 후보를 대변한다.
나. 예비 선본장은 본 세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예비 선본과 예비 선본원이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16조. (예비 선거운동본부원)
가. 예비 선본원은 선본 내부의 규정 및 결정에 따라 선본의 활동에 참여한다.
나. 예비 선본원은 본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다. 예비 선본원의 명단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다.

17조. (권리) 각 예비 선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 본 세칙이 규정하는 후보자 추천 절차 및 선전을 선본 책임 하에 진행한다.
나.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본 세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8조. (의무) 각 예비 선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가. 인문대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준수할 의무
나. 선관위 결정사항 및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
다.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를 의무
라. 기타 본 세칙이 예비 선본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무

제3절 선거운동본부

19조. (역할)
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는 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관위의 감독 하에 후보의 선거운동, 선전 등을 진행하는 조직이다.
나. 선본은 후보자와 선본 구성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세분석, 정책공약, 입장 등을 생산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움과 동시에 실현 가능한 당선 후의 계획을 준비한다.

다. 선본은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

20조. (구성)
가. 각 선본은 정후보, 부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으로 구성된다.
나. 정·부후보는 당해 인문대학생회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여야 한다.

21조. (선거운동본부장)
가. 선본장은 선관위에 대하여 선본을 대표함과 동시에 후보를 대변한다.
나. 선본장은 본 세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선본과 선본원이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준수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22조. (선거운동본부원)
가. 선본원은 선본 내부의 규정 및 결정에 따라 선본의 활동에 참여한다.
나. 선본원은 본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23조. (선본원 신고)
가. 선본원의 자격은 중앙대학교 재적생으로 한다.
나. 각 선본은 선본 구성원의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명단에는 선본 구성원의 이름,학번, 전공, 선본 내에서의 직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최초 선본원 등록은 선거운동본부 현황 내역서를 통해서 하며,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선관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선본장이 선관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라. 선본원의 자격이 없거나 이미 다른 선본의 선본원인 사람을 선본원으로 신고하거나,선본원이 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본원으로 신고한 경우 선관위는 해당하는 사람의 선본원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선본에 책임이 있는 경우 경중을 따져 징계할 수 있다.

24조. (권리) 각 선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 본 세칙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및 선전을 선본 책임 하에 진행한다.
나. 선본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선관위에 공간의 대여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본 세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5조. (의무) 각 선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가. 인문대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준수할 의무
나. 선관위의 결정사항 및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
다.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를 의무
라. 기타 본 세칙이 선본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무

제4절 참관인

26조. (통칙)
가.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을 참관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각 선본은 각 투표소 당 참관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27조. (자격)
가. 참관인은 선본원으로 한다. 나. 각 후보자는 등록서류와 함께 참관인 명부와 재학증명서 또는 재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각 투표 전 날 17시까지 교체할 참관인의 명단과 재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를 인문대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관인 교체는 다음 날 적용된다.
다. '나'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다.

28조. (이의제기)
가.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 진행 상황을 참관하여 투표 진행사항에 대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투표소 내에서 행한 참관인의 결정에 대해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투표소에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 참관인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제기할 수 없다.

29조. (규제내용)
가.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독려 및 유세 운동을 진행할 수 없다.
나.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측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했을 때 선관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까지 해당 선본은 투표소 참관자격을 상실한다.
다.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투표를 방해했을 경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불필요한 언행을 하는 경우)
2)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하는 경우
3) 기타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30조. (기타 사항)
가. 특정 후보 측의 참관인 부재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후보 측의 이의를 기각한다.
나. 참관인은 투표 당일 오전 09시 30분까지 선관위와 함께 투표소 설치를 돕는다.
다.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제기할 경우 인문대선관위원장 입회 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선거권자의 투표를 중지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4장 선거

31조. (선거 일정)
가. 인문대학생회 선거는 매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선거일은 인문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이외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라. '나'항의 일정은 인문대운영위원회에서 후보 등록 마감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2조. (후보자 추천)
가. 후보자 추천이라 함은 특정 후보의 추천서 작성을 위한 제반 행위로 규정한다.
나.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관위가 정한다.
다. 후보자 추천 기간 중 아래와 같은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 후보자 추천, 설문조사, 후보자 추대 모임 등은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2) 추천서는 선관위에서 추천 시작 하루 전에 배포한 추천서를 사용한다.
라. 입후보 예정자는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추천서에 사진과 약력을 기재할 수 있고, 띄어쓰기를 제외한 100자 이내의 입후보 계기 및 포부를 기재할 수 있다. (단, 예비 룰미팅을 거쳐 등록된 예비 후보자는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33조. (예비 후보자 등록) 예비 후보자에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항목을 구비하여 예비 룰 미팅 30분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재학 증명서 또는 재적 증명서
2) 예비 선본장의 재학 증명서 또는 재적 증명서
3) 예비 후보자 사진 파일
4) 예비 선거운동본부의 명칭과 대표 색상
5) 예비 선거운동본부의 5개 이내의 대표 공약

34조. (예비 후보자 최종등록 : 예비 룰미팅) 선관위는 예비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예비 후보자 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며, 이를 예비 룰 미팅이라고 칭한다.
가. 예비 룰 미팅의 역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
1) 등록구비 서류 확인 및 예비 후보 등록 결정
2) 선거 시행 세칙 검토
3) 후보자 추천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 합의
4) 예비 룰 미팅 참여자는 각 예비 선본장으로 하며, 불참 시 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예비 입후보자는 예비 룰 미팅을 참관할 수 있으며 예비 룰 미 팅 중 발언, 의사표명, 예비 선본장과의 협의는 불가하다. 이를 위반할 시 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나. 예비 룰 미팅 결과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공지한다.

다. 예비 룰 미팅 결과는 건물, 학생회 게시판, SNS 등을 통해 공지한다.

35조.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 행위로 규정한다. (단, 선거에 관한 개인의 일반적인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나. 선거운동의 세부 내용은 룰 미팅 시 선관위와 각 선본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한다.
다.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정한 유세기간 내로 제한되며, 해당기간 전후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물 및 기타 제반사항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36조. (부정선거운동)
가.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1) 매수 및 이해 유도
2) 금품살포
3) 선거의 자유 방해
4) 선전 방해: 자보 등 선전매체의 훼손을 포함한다.
5) 투표권 행사 및 투표 절차 방해
6) 선관위 방해
7) 허위 사실 유포
8) 후보자 비방
9) 선거운동 제한자의 선거운동 참여
10)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11) 사전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의심행위는 사전선거운동임이 명백하거나, 선관위로의 제보가 있거나, 공론화가 된 경우 조사한다. 단, 입후보자 혹은 입후보예정자의 선본원 섭외를위한 개인적인 면담 및 연락은 부정선거운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2)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후의 선거운동
13) 기타 본 세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
나. 선관위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조사한 후, 후보자, 후보가 속한 선본 또는 그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관여하였을 경우 징계한다. 자세한 징계 기준은 제6장에 따른다.

37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가. 선관위 위원, 인문대학생회 집행위원장(위원), 기타 간부 및 대표자, 재적 중이 아닌 자
나. 위항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선관위는 논의를 통해 경중에 따라 해당 지지 선본을 징계한다.

38조. (선거운동 기간)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관위가 정한다.
나.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39조. (선거권)
가. 선거권자는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나. 유학생의 경우 본회의 회원으로 투표권이 주어지며, 타 학교 출신의 본교 교환학생 및 방문 학생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다음 연도 2월 졸업예정자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단. 다음 연도 2월에 졸업이 되지 않는 자는 지금 당장 확실하게 파악하기 불가능하므로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한 사람만 유권자로 인정한다.)
라. 휴학생의 경우 투표한 사람만 유권자로 인정한다.
마. 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후보자 추천서에는 회원의 성명, 학번, 학과, 서명을 기재하며 추천기간 하루 전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따른다.

40조. (피선거권)
가. 정· 부 학생회장 입후보자 2인 1조
나. 정. 부 학생회장 입후보자 각각 본회의 회원인 자
다. 본 회원으로부터 5개 학과 및 학부 각 10명 이상, 총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단, 후보자 추천시에 학부 내 전공은 개별로 인정하며, 회원은 선본별로 복수 추천이 가능하다.)
라. 학생자치기구의 간부(인문대운영위원회원, 인문대학생회집행국원, 각 과운영위원, 각 과학생회 집행부원 등)가 아닌 자로서, 후보자 모두 대한민국공직선거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1조. (후보자등록)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구비하여 룰미팅 30분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재학 증명서 또는 재적 증명서
2) 31조 '다'항에 의한 추천서
3) 선본장, 선본원 명단과 재학 증명서 또는 재적 증명서
4) 2000자 이내(띄어쓰기 제외)의 출마 소견서
5) 후보 약력 소개서
6) 후보자 사진 파일

42조. (입후보자 심사)
가.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31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자격조건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나. 입후보자가 32조 '가'항의 구비서류를 등록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43조. (사퇴규정)
가. 선관위와 학교 간부 및 대표자 중 선거운동을 하려는 자는 추천 시작 사흘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나. 선관위는 입후보를 제외하고 사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선관위원이선관위의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관위가 논의하고 과반수로 의결하여 사퇴 여부를 결정한다.

라. 사퇴하려는 자는 사퇴사유서 등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4조. (입후보자 최종등록: 룰미팅)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 최종 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며, 이를 룰 미팅이라고 칭한다.
가. 룰 미팅의 역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
1) 등록구비 서류 확인 및 최종 등록 결정
2) 선거 시행 세칙 검토
3) 유세활동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 합의
4)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의 사항 논의
나. 룰미팅 참여자는 각 선본장으로 하며, 불참 시 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는 룰 미팅을 참관할 수 있으며 룰 미팅 중 발언, 의사표명, 선본장과의 협의는 불가하다. 이를 위반할 시 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룰미팅 결과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공지한다.
라. 룰미팅 결과는 건물, 학생회 게시판, SNS 등을 통해 공지한다.

45조. (선거유세) 유세는 개인유세와 합동유세로 나누며 선거운동 기간에 정한다.

46조. (개인유세)
가. 후보자의 개인별 연설회는 강의실연설회, 옥외 연설회와 간담회로 국한한다.
나. 간담회의 형식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다. 사재 유인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선관위의 사전 심의를 거쳐 선관위의 심의필을 넣은 후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배포한다. (단,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배포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라. '가', '다'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47조. (합동유세)
가. 선관위는 1회 이상의 합동유세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나. 합동유세는 선관위의 책임 하에 시행된다.
다. 합동유세의 순서는 사전에 추첨하여 정한다.
라. 공고된 유세시간 30분 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한 후보당 유세시간은 공연, 지지유세, 본유세를 포함 20분 이내로 한다. (단, 유세 교체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20분을 넘어서면 주의 1회를, 또다시 2분이 지나면 경고 1회와 동시에 유세를 중단시킨다.
바. 타 후보자의 유세 시 유세를 방해할 수 없다.
사. 각 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하는 형태의 유세에 응할 의무를 가진다.
아. 합동 유세의 형식은 각 선본과 선관위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48조. (합동 공청회)
가. 선관위는 1회 이상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

다.
나. 합동 공청회는 선관위의 책임 하에 시행된다.
다. 후보자는 합동 공청회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단, 이를 어길 시 징계가 주어진다.)
라. 본회의 회원 및 학내 언론사는 합동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
마. 합동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학내 언론사의 질의 및 응답, 참석자의 서면질의 등으로 구성된다.
바. 합동 공청회의 형식은 각 선본과 선관위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이의제기

49조. (이의 제기)
가. 상대 선본에 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투개표 참관인과 선본장만이 할 수 있다.
나. 입후보자 및 선본은 선본장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투개표 시 참관인은 구두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다. 이의제기의 내용에는 일시, 장소, 사유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라. 선거 운동원이 가. 나.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마. 각 선본은 선관위원이 본 세칙 2장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선관위원에 대해 선관위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선관위원을 제외한 선관위 과반 참여에 과반 찬성으로 해당 선관위원을 제재 혹은 제명할 수 있다.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과 선관위의 결정을 공고한다.)

50조. (이의 제기의 처리)
가.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선관위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나. 이의제기의 처리는 선관위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의결로 처리한다.

제6장 징계

1절 총칙

51조. (정의) 징계라 함은 본 세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52조. (징계의 종류)
가.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 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나. 징계의 종류는 임의적 징계와 필요적 징계로 나누며 그 결정은 45조, 46조에 의한다.

53조. (징계의 통보)
가. 시정 명령과 주의는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나. 시정명령이나 주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해당 후보가 이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후보에게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다. 경고를 받은 선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한다.
1) 경고 공고는 12시간 이내에 사과문 2부와 경고공고문 2부를 대자보를 통해 게시한다.
2) 사과문과 경고공고문은 대자보 선전물량에 포함하고, 대자보 선전물량 초과 시 기존 대자보 선전물을 제거해야 한다.
3) 사과문에는 해당 선본명, 기호, 징계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4) 사과문의 게시 장소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5) 사과문은 유세기간 동안 부착한다.
라. 경고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1) 경고 1회 - 경고 내용을 대자보에 공개 (공개 사과문과 함께)
2) 경고 2회 – 경고 시점 이후 24시간 개별 강의실 유세금지, 공동 유세 시 유세시간 10분감축
3) 경고 3회 - 해당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

2절 징계의 의결

54조. (임의적 징계)
가. 임의적 징계라 함은, 본 세칙 각 조항에“징계를 할 수 있다” 또는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 등 징계 여부 판단을 요하는 경우, 이외 본 세칙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가 징계 사항으로 결정한 경우로, 징계의 결정이 선관위 재량으로 되어 있는 징계를 말한다.
나. 임의적 징계의 결정은 선관위의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5조. (필요적 징계)
가. 필요적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한다.”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등 징계 여부가 명확히 규정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이 선관위 재량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나. 필요적 징계를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이 각 세칙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한다. 단, “징계를 한다.” 또는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라고 규정된 경우 선관위의 과반수 의 결에 따라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56조. (재심의)
가. 선본장은 경고의 징계나 주의 2회 누적으로 인하여 경고 1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징계 조치 후 3시간 이내에 선관위에게 사유와 함께 재심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나. 재심의 시 선관위는 선본장에게 발언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 재심의는 기존 결정에 대해 1회 더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라. 재심의 이후에도 경고가 부여될 경우, 해당 선본은 1심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44조 다.’항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장 투표

1절 총칙

57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가. 투표는 2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투표시간은 첫째 날 10시부터 19시까지, 둘째 날 10시부터 19까지이다.
다. 불가피하게 투표소를 늦게 설치한 경우, 선관위의 논의 및 의결로 투표시간을 당일에 한해 해당 시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58조. (투표소)
가. 투표소는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나. 투표소에는 선관위 홍보물, 학과 선관위 홍보물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불허한다.
다. 투표소에는 투표시간에 맞추어 기표소, 투표함 혹은 투표기계, 이외 투표를 위한 모든 제반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59조. (투표기계, 투표함의 관리)
가. 전자투표시 투표기계의 이송 및 보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따른다.
1) 투표 당일 오전 8시 30분에 선관위원과 각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소로 선관위원과 투표참관인이 함께 투표기계를 이송 및 설치한다.
2) 노트북, 바코드 스캐너, 식별 바코드 용지 등의 제반 물품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관위원이 이송 및 설치한다.
3) 투표가 끝난 후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이 투표기계를 철거하고 참관인이 확인한 후 선관위원과 함께 선관위실에 이송한다.
4) 투표기계 이송 시 노트북, 바코드 스캐너, 식별 바코드 용지 등의 제반 물품도 함께 이송한다.
5)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투표기계 및 제반 물품 철거 및 이송을 확인하고, 이외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6) 각 투표소와 선관위원은 투표기계의 이송 전후의 이상에 대한 투표참관인의 확인을 받는다.
7) 투표기계는 선관위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8) 선관위실이 투표기계 보관에 부적당할 시 각 선본장의 의견을 들어 학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투표 기계 관리 업체에 인계할 수 있다.
나. 종이투표시 투표함의 이송 및 보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따른다.
1) 투표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선관위원과 각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봉함에 자물쇠를 채우고 투표소로 선관위원과 참관인이 함께 투표함을 이송한다.
2)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및 제반 물품은 참관인의 입회 아래 해당 선관위에게 인계한다.

3) 투표가 끝난 후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이 투표함을 봉하고 참관인이 확인한 후 선관위원과 함께 선관위실로 이송한다.
4) 투표함 이송 시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기재한 선거인 명부
②남은 투표용지
③제반 기표 용품
5)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투표함, '4)'절의 서류물품 등을 인수한 즉시 이외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6) 각 투표소와 선관위원은 투표함의 이송전후의 이상에 대한 투표 참관인의 확인을 받는다.
7) 투표함은 선관위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8) 선관위실이 투표함 보관에 부적당할 시 각 선본장의 의견을 들어 학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60조. (투표자의 자격)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신분을 확인 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가.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으로 제한한다.)
나.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학생이라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중앙대학교 인문대 학생증 혹은 모바일 학생증을 소지한 자, 인문대 교학지원팀 혹은 각과 사무실에서 제공한 자료를 통해 학번, 학과, 이름 및 얼굴 대조가 가능한 자)

61조. (투표절차)
가. 전자투표로 시행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선관위의 선거인 신분확인(얼굴과 이름, 학번)
2) 선거인 명부 확인
3) 인증번호 배부
4) 전자투표 실시
나. 종이투표로 시행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선관위의 선거인 신분확인(얼굴과 이름, 학번)
2) 선거인 명부 확인
3) 투표용지 배부
4) 투표

62조. (투표소에서의 질서)
가. 투표소에서는 선관위원, 투표참관인, 투표자 이외에 있을 수 없다. 나. 선관위원은 투표소에서 투표 독려를 할 수 있으며, 투표참관인은 불가능하다. 다.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라. 투표소에서 선거운동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한다.

제8장 개표

1절 총칙

63조. (개표시간) 개표시간은 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64조. (개표장)
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나.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다. 후보자는 개표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한다.

65조. (개표절차)
가. 전자투표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표인 수 공고
2) 개표에 필요한 암호 입력(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암호는 선관위원장, 전자투표시행 업체가 소지하고 있는다.)
3) 개표
4) 개표 결과 공개 및 공고
나. 종이투표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표인 수 공고
2) 투표함 개봉
3) 개표
4)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5)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 후 투표함에 재투입
6) 현황판에 기재
다.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의 책임아래 수행한다.

66조. (무효투표)
가. 전자투표 시행 시 기계적 오류 또는 중복투표 등 선거과정에서 생긴 무효표는 선관위가 표처리에 대하여 논의한다.
나. 표처리에 대한 논의 결과는 논의가 끝난 후 즉시 공지한다.
다. 종이투표로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경우
3) 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라. 종이투표의 경우 56조 '다'항 이외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논의 후 결정한다.
마. 종이투표에서 발생한 무효표의 경우 무효표 수와 무효표로 처리된 이유, 무효표 사진 등을 공개한다.
바.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의 문제가 발생한 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한

다.

67조. (기권투표)
가. 전자투표시 발생하는 기권표는 회원의 권리로서 투표 시 보장받아야 한다.
나. 투표용지(전자투표 및 종이투표)에는 반드시 기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권란을 만들어야한다.
다. 기권표는 무효표와 구분된다.

68조. (효력)
가.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선관위와 선본의 합의 하에 1일에 한하여 연장 투표를 할 수있다. 또한 연장투표 시, 투표율이 50%가 안될 경우 선관위의 논의결정으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나. 선거인명부와 투표 수를 대조하였을 때, 한 투표함에서 5%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해당 투표함 내의 투표용지는 유효표, 무효표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선거인명부와 투표 수를 대조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5%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 처리한다.

69조. (재선거)
가. 58조 '가', '나', '다' 항에 해당할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처리 되며, 입후보 절차부터 다시 시작한다.
나. 재선거 일정은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 및 공고한다.
다. 학기 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다음해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70조. (결선투표, 재투표)
가. 개표 이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나. 선관위는 재투표 일정을 공고하고,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제9장 당선

71조. (당선의 기준)
가. 전자투표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 투표용지 수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단,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는 무효표보다 많아야 한다.)
나. 종이투표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 투표용지 수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단,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는 무효표보다 많아야 한다.)
다. 최다득표자가 유효 투표용지 수의 과반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라. 기권 표수가 선본 중 1위의 득표수보다 많을 경우 본 세칙 59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마. 1, 2위 간의 득표차가 무효표수 이하일 경우 본 세칙 60조에 따라 1, 2위 간의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단, 기권표가 1위 혹은 2위를 차지한 경우 최다득표 선본을 단선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바. 단선의 경우 해당 선본은 과반의 찬성을 득표해야 하며, 찬성표가 과반 미달 시 낙선으로 간주한다.
사. 단선의 경우 찬성표수와 반대표수의 차이 혹은 찬성표수와 기권표수의 차이가 무효표수 이하일 경우 본 세칙 60조에 따라 재투표 한다.

72조. (당선공고)
가.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선 공고에 관련한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당선공고를 한다.
나.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이 넘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관위는 즉시 소집하여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선관위 재적위원 과반으로 한다.)
라. 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확정공고를 한다.

제10장 선거 정리 사업

73조. (개표 후 유예기간)
가. 선관위는 개표 종료일부터 당일을 포함하여 3일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1) 개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및 심의
2) 선본의 부정행위 적발 및 사후 징계

74조. (선거 정리기간)
가. 선관위는 개표 종료일부터 당일을 포함하여 7일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개표 후 유예기간 동안은 전조가 규정하는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1) 선관위의 관리 하에 있는 물품과 자산의 정리 및 당선된 선거운동본부로의 소유권 이전
2) 선본이 제출했거나 선관위가 생산한 각종 자료의 정리
3) 전자 투표의 경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삭제
4) 종이 투표의 경우 개인정보 삭제 및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밀봉
5) 선거가 무산된 경우 관련 데이터베이스 삭제
6) 기타 선거의 정리를 위해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나. '가' 항의 기간 동안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해소를 연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제11장 선거 자금 공영 제도

75조.(목적) 인문대학생회 선거 출마가 재정능력에 좌우되지 않게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비용 중 일부를 인문대 학생회비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76조. (운영원칙)
가. 선거 자금 공영 제도는 해당 학기 학생회비의 10% 이내에서 집행되며 한 선본에게 예산 총액의 50% 이상을 지원할 수 없다.
나. 선거 자금 공영 제도 지원 범위는 룰미팅을 통해 정해진 선전물로 한정하며, 선거 이후에 선관위의 심의 및 감사를 받아 지원한다.
다. 선거자금 공영제도를 통하여 집행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선거선전물과 인쇄물은 각 선거 운동본부에서 자력으로 집행한다.

77조. (조건) 선거자금공영제도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선거운동본부에 집행된다.
가. 선거시행세칙에 의해 입후보한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
나. 개표 후 총 유효득표수가 10% 이상인 선거운동본부
다. 선거기간 중 부정/부패행위에 의해 후보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선거운동본부

부칙

1조. (선거지침의 제정) 이의신청에 의해 선관위가 심의 결정하며, 본 세칙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선거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그 범위는 본 세칙을 효력을 벗어날 수 없다.)
가. 본 시행세칙의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면 선본장 - 선관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 해석을 확정한다.
나. 선본과의 협의 및 선거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을 연석회의 목적으로 한다.
다. 선관위원과 각 선본장(또는 선본장 대리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연석회의 구성으로 한다.
라. 선본장은 연석회의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마. 선관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연석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바. 연석회의 개회를 요구할 시 요구한 위원이 논의안건을 정하여 요구한다.

2조. (선거시행세칙의 효력발생) 본 시행세칙은 인문대운영위원회와 인문대학생대표자 회의의동의를 거쳐 제6대 인문대학생회 선거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조. (비대면 선거) 천재지변 등으로 본 선거시행세칙을 따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년도에 한해 비대면 선거를 진행하며, 인문대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는 별도의 임시선거규칙을 따른

다.